|  |  |  |
| --- | --- | --- |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령제32호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이 2017년 1월 2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116차 부서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공안부, 외교부, 상무부가 동의하였다. 이에 이를 발표하며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부장윤울민  2017년 3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입출국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하고 국무원의 간방정권(簡政放權, 정부 기능의 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정부권한 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과 서비스 최적화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노부발[1996]29호)의 유관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 제8조, 제10조의 “직업비자”를 “Z자비자”로 수정한다.  2. 제14조를 삭제한다.  3. 제15조를 “방중 업무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서와 본국의 유효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에 의거하여 중국의 해외주재 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가서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제2항 규정에 부합되는 인원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통지서와 전보에 의거하여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제3항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은 문화부의 비준(승인)문건에 의거하여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본 규정 제10조 제1관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은 합작교류프로젝트문서에 의거하여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기증명에 의거하여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본 결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  |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修改《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的决定**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32号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修改〈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的决定》已经2017年1月22日人力资源社会保障部第116次部务会审议通过，并商公安部、外交部、商务部同意，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部长 尹蔚民  　　2017年3月13日  　　根据《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和《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的规定，按照国务院关于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的要求，现决定对《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劳部发〔1996〕29号）有关条款进行修改。  　　一、将第八条、第十条中的“职业签证”修改为“Z字签证 ”。  　　二、删去第十四条。  　　三、将第十五条修改为“获准来中国工作的外国人，应凭许可证书及本国有效护照或能代替护照的证件，到中国驻外使、领馆、处申请Z字签证。  　　凡符合第九条第二项规定的人员，应凭中国海洋石油总公司签发的通知函电申请Z字签证；凡符合第九条第三项规定的人员，应凭文化部的批件申请Z字签证。  　　凡符合本规定第十条第一款规定的人员，应凭合作交流项目书申请Z字签证；凡符合第十条第二项规定的人员，应凭工商行政管理部门的登记证明申请Z字签证。”  　　本决定自公布之日起施行。 |